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제283호 2011. 9. 28(수)

| | |
|---|----|
| 조 례 | |
| ○ 사천시 조례 제962호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 2 |
| ○ 사천시 조례 제963호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 4 |
| ○ 사천시 조례 제964호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 18 |
| ○ 사천시 조례 제965호 사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
| ○ 사천시 조례 제966호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 ○ 사천시 조례 제967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 ○ 사천시 조례 제968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 ○ 사천시 조례 제969호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34 |
| 규 칙 | |
| ○ 사천시 규칙 제501호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56 |
| 공 고 | |
| ○ 사천시 공고 제2011-522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 84 |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96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라”로,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 중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3)

제13조의2(정년) 어린이집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1. 시설장 : 60세
2. 그 밖의 종사자 : 57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천시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2와 같다.
4. 특별휴가는 별표 3과 같다.

제17조제2호 중 “기타종사자”를 “그 밖의 종사자”로 한다.

제18조제1호라목 및 제2호바목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4)

사천시 조례 제96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전통무형문화재를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이란 전수관 본관(사무실, 대공연실, 물품보관실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무형문화재”란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11-가호 진주·삼천포농악, 제73호 가산오광대와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고법, 제9호 판소리수궁가, 제28호 사천마도갈방아소리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전수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문화재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3. 지역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전수활동
4. 그 밖에 전수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전수관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5)

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등의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및 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업무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도의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① 전수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6)

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사용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2. 사용목적 및 일시
3. 사용물건의 종류와 면적
4. 사용 예정 인원
5. 사용 시 특별한 설비를 하는 때에는 그 개요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당초 건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할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수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전수관 시설을 시장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

제11조(사용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학관련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7)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 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 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 나.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60퍼센트
- 다. 사용개시 후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전수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8)

수탁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사천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 등을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9)

[별표 1]

무형문화재전수관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 명 칭 | 소 재 지 | 비 고 |
|---------------|---------------------|-----|
| 가산오광대 전수교육관 |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830-2번지 | |
|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교육관 |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262번 | |
| 사천시 농악 전수교육관 | 사천시 송포동 177-2번지 | |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10)

[별표 2]

무형문화재전수관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 구분 | 사용시간 | 사용료 | 비고 |
|----|------|--------|----|
| | 오전 | 20,000 | |
| | 오후 | 30,000 | |
| | 야간 | 40,000 | |
| | 1일 | 70,000 | |

※ 사용시간의 정의 등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5.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11)

[별지 제1호서식]

| 위탁운영 신청서 | | | |
|---|--------------|-------------|------|
| 신 청 인 | 주 소 (소재지) | | 전화번호 |
| | 법인명칭 (단체) | 설립 년 월 일 |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탁기간 | | | |
| 위탁대상시설 | | | |
| 위탁목적 | | | |
| <p>「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수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인)</p> <p>사천시장 귀하</p> | | | |
| <p>(구비서류)</p> <p>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 ③ 주민등록등본 각 1부(개인인 경우)</p> | | | |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12)

[별지 제2호서식]

○○○운영의 위·수탁협약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전수관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사천시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등)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와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 사 무 명 | 사 무 내 용 |
|-------|---------|
| | |

2. 위·수탁 시설·장비

| 시 설 · 장 비 명 | 내 용 및 수 량 |
|-------------|-----------|
| | |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한 사무는 “을”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시설 등의 관리) ① “을”은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망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13)

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갑”은 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연간 ○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을”은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무와 관련하여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
여야 한다.

③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을”은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
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갑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재 위탁 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
의 협의에 따른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3.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9조(시설 등의 반환) 제2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을”은 “갑”에게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14)

시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제11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용어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르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재판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사천시

사천시장 ○○○ (직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을” ○○○○○

대표이사 ○○○ (인)

경상남도 ○○시 ○○동 ○○번지

※ 개인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282호(15)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 | | |
|------------------|--------------|------|-------------------|
| 신청인 | 주 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성 명 (단체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용 시 설 명 | | | |
| 사 용 일 시 (기 간) | | | |
| 사 용 목 적 | | | |
| 비 고 | | | |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16)

[별지 제4호서식]

사 용 허 가 서

(앞면)

| | | | |
|---|---------|--------------------------------|--|
| 허가번호 : 제 | | 호 | |
| 허 가 내 용 | 사 용 자 | 성명(단체명) |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 |
| | 사 용 인 원 | | |
| | | | |
| 전 수 관 시 설 | | | |
| 사용자 설치 시설물 | | | |
| 사 용 료 | 금 액 | | |
| | 산출내역 | | |
| <p>「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뒷면 허가조건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p>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17)

시설 사용허가 조건

(뒷면)

- ① 관계 법령,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을 준수한다.
- ②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③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 되었을 경우 원상 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18)

사천시 조례 제96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문화예술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와룡문화제, 구암제 업무 추진
2. 사천세계타악축제 업무 추진
3.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4.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 보급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6. 지역축제·문화예술행사의 육성 및 지원
7.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19)

9. 그 밖에 본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20)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과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시의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21)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22)

사천시 조례 제96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수입증지조례”를 “사천시 수입증지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를 “시 수입증지”로 한다.

제2조 중 “수입증지”를 “시 수입증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 이미지가 된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23)

3. 발행일자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천시”를 “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금고”를 “시금고”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금고”를 “시금고”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금고”를 각각 “시금고”로, “5일안”을 “5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금고”를 “시금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24)

사천시 조례 제96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25)

사천시 조례 제96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사천시(이하“시”라 한다)”를 “시”로,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로,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26)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8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각 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규칙”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 중 “각 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영 제55조제5항제5호”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27)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0평방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 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19조 중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28)

제20조제1항 중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각각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나목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각각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각각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다목 단서 중 “동법”을 “같은 법”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각각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나목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동법”을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29)

“같은 법”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동호”를 “같은 호”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호”를 “같은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을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7조 중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8조 중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로,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을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30)

등의 용적률)”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1”을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2조 중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중 “20%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0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9조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에 따른”으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9조 규정에 의한”을 “법 제5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인 이상 9인”을 “5명 이상 9명”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2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31)

영 제134조제4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제6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적용례) 본문 제45조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봉계지구, 정곡지구, 배춘지구, 신북지구, 정곡2지구)에 대하여는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32)

사천시 조례 제96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신설한다.

제5조의2(공동주택에 대한 보안등 요금지원) ① 시장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의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분기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경상남도, 국토해양부를 포함한다)에서 선정하는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평가에 필요한 지표는 매년 12월 말”을 “평가지표는 매년 2월 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를 “전년도 4월 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말”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3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의2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34)

사천시 조례 제96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사 천 시 수 도 급 수 조 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35)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7.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블록”이란 시 전체 급수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통별(광역상수도 수수지역, 지방상수도 수수지역) 및 배수지별로 분할된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를 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한 호 또는 한 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36)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급수설비를 한 개소만 설치한다.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 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37)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가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 지정은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지명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③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 1과 같다.

④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38)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정용 수도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원인자부담금) ① 시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증설, 수도시설손괴 등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은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개조비용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조작이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 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⑤ 시장이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39)

⑥ 제5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4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2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별개의 독립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여러 주택을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급수공사는 계량기를 비롯한 기존 급수설비는 모두 철거하고 단일계량기를 설치하며,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하는 신축건물의 시설분담금에서 기존 급수장치의 개수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 공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기존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징수한다.

제16조(부담금 산출기준) 제14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이설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에 따른 제수변 사이의 퇴수량을 포함하여 누수량의 총량은 별표 4와 별표 5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2. 누수시간은 밸브조작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일반용으로 최종단계의 급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단가에 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계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40)

약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5. 급수운반차 출동 시 적용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6.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 단가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상태 등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복구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 등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7. 동절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약품비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살포하는 모래 등 자재대 및 동원차량의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8. 수도시설의 복구에 따른 차량비, 직원(밸브조작 및 현장감독자 포함)의 급량비와 여비, 설계비, 준공검사비 및 관할 주민에 대한 홍보비 등은 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징수한다.

제1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에 따른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41)

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급 수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2조제2항의 가구 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요금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급수설비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출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42)

수시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평상시에 포함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5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43)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8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9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고,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그러한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44)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수도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도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자동이체에 따른 납부 시에는 말일로 하며 수용가의 신청에 의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45)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 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2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 리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46)

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주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진한 자
8.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47)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고, 그 비용은 해당 수도사용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설비를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5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사천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에 따른 관리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48)

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급수공사 신청
2.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3. 공사의 시행
4. 공사비의 선납
5.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6.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7. 제21조의 신고
8.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9.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0. 급수중지와 폐전
11. 요금의 징수
12. 업종의 구분
13. 요금의 조정
14. 사용수량의 인정
15.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6. 납기와 징수방법
17. 가산금
18. 납부고지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49)

19. 임시급수
20. 운반급수와 요금
21. 요금 등의 감면
22.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3. 정수처분
24. 과태료 등
25. 급수설비의 철거
26.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27. 이의신청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서 부과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50)

[별표 1]

시설 분담금(제15조제1항 관련)

| 계 량 기 구 경 별 | 금 액(원) | 비 고 |
|----------------|-------------|-----------------------------|
| 13m/m | 168,000 | 개조시에는 구경별 분담 금 차액을 징수한다. |
| 20m/m | 455,000 | |
| 25m/m | 808,000 | |
| 32m/m | 1,225,000 | |
| 40m/m | 1,642,000 | |
| 50m/m | 3,010,000 | |
| 75m/m | 5,472,000 | |
| 100m/m | 12,312,000 | |
| 150m/m | 24,694,000 | |
| 200m/m | 38,376,000 | |
| 250m/m | 69,077,000 | |
| 300m/m | 111,214,000 | |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51)

[별표 2]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제29조제1항 관련)

| 구분 업종별 | 사 용 요 금 | | 구 경 별 | 구경별 정액요금 (1전당/원) |
|-----------|----------------------------|------------|--------|---------------------|
| | 단 계 별 (m ³) | 요 금 (원) | | |
| 가정용 | 1-20 | 560 | 13m/m | 1,610 |
| | 21-30 | 780 | 20m/m | 3,120 |
| | 31이상 | 970 | 25m/m | 5,020 |
| 일반용 | 1-50 | 930 | 32m/m | 8,930 |
| | 51-100 | 1,200 | 40m/m | 15,060 |
| | 101-300 | 1,250 | 50m/m | 23,100 |
| | 301-500 | 1,360 | 75m/m | 56,020 |
| | 501이상 | 1,440 | 100m/m | 95,510 |
| | | | 150m/m | 208,100 |
| 대중탕용 | 1-500 | 930 | 200m/m | 302,410 |
| | 501-1,000 | 1,250 | 250m/m | 407,880 |
| | 1,001-1,500 | 1,300 | 300m/m | 491,900 |
| | 1,501이상 | 1,360 | | |
| 전용공업용 | m ³ 당 | 690 | | |

※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 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52)

[별표 3]

업종구분표(제30조제1항 관련)

| 업종 | 구분내용 |
|-------|--|
| 가정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업·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
| 일반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 대중탕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대중 목욕장업 |
| 전용공업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단지 등 일단의 공업전용지역에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한 급수 |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53)

[별표 4]

수압별 누수량 조건표(제16조제1호 관련)

| | | | | | | | |
|-------------------------|--------|--------|--------|--------|--------|--------|-------|
| 수압(kg/cm ²) | 0.2 | 0.4 | 0.6 | 0.8 | 1.0 | 1.2 | 1.4 |
| 누수량(m ² /hr) | 1432*A | 2.024 | 2.479 | 2.862 | 3.20 | 3.20 | 3.786 |
| 수압(kg/cm ²)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 누수량(m ² /hr) | 4.048 | 4.293 | 4.525 | 4.746 | 4.957 | 5.160 | 5.355 |
| 수압(kg/cm ²) | 3.0 | 3.2 | 3.4 | 3.6 | 3.8 | 4.0 | 4.2 |
| 누수량(m ² /hr) | 5.543 | 5.724 | 5.901 | 6.072 | 6.238 | 6.40 | 6.558 |
| 수압(kg/cm ²) | 4.4 | 4.6 | 4 | 5 | 6 | 7 | 8 |
| 누수량(m ² /hr) | 6.712 | 6.863 | 7.011 | 7.155 | 7.838 | 8.466 | 9.051 |
| 수압(kg/cm ²) | 9 | 10 | 11 | 12 | 13 | 14 | - |
| 누수량(m ² /hr) | 9.60 | 10.119 | 10.613 | 11.085 | 11.538 | 11.973 | - |

※ 산출근거 $Q=3.2 \times 4 \times p1/2$

기본식 : $Q=AV$

Q : 시간당 누수량(m²/hr)

A : 누수분위 면적(cm²)

P : 수압(kg/cm²)

예) 누수량 산출

1mm×5cm가 파열되고 수압이 3.6kg/cm²이라면

$A=0.1 \times 5=0.5\text{cm}^2$ $Q=6.072 \times 1.5=3.036(\text{m}^2/\text{hr})$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54)

[별표 5]

관내수량 계산표(제16조제1호 관련)

| | | | | | | | | |
|------------------------|-------|-------|-------|-------|-------|-------|-------|-------|
| 관경(m/m) | 80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 수량(m ² /m당) | 0.006 | 0.008 | 0.018 | 0.031 | 0.049 | 0.071 | 0.096 | 0.126 |
| 관경(m/m)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 수량(m ² /m당) | 0.159 | 0.196 | 0.283 | 0.385 | 0.503 | 0.656 | 0.785 | 0.950 |
| 관경(m/m) | 1,200 | 1,350 | 1,500 | | | | | |
| 수량(m ² /m당) | 1,131 | 1,431 | 1,767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55)

[별표 6]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제43조 관련)

| 위 반 내 용 | 과 태 료 | | 행 정 처 분 |
|------------------------------|---------------------------------------|---------------------------|---|
| |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 급수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 |
| 1. 급수 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300,000원 | · 부정급수설비 철거 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
|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300,000원 | · 부정급수설비 철거 명령 · 부정급수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
| 3. 계량기 작동 방해, 훼손, 무단 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20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0원 | · 계량기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 명령 불이행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 4. 계량기 매물,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 |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 | 200,000원 |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 6.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 7. 제24조에 따른 급수판매금지 위반 | | 2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 과태료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 8. 업종 위반 | | | · 업종 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 추징 · 업종 직권 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56)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0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8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한 개소란 한 개의 택지(울타리)를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57)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가 급수설비를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급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승인조건 및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규 또는 구경 변경공사는 일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 실 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급수사정상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을 초래할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또는 공용수도 설비와 소화전에서 분기승인을 요청할 때

③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공사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통지 시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도계량기의 설치) ① 수도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58)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 등으로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주택 및 일반건축물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검침업무 등 관리가 편리한 가장 가까운 공지상에 설치
2.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를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에 설치

② 수도계량기의 구경과 기종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급수공사준공)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 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
 2. 급수업종 변경 신고 : 별지 제5호서식
 3. 급수설비의 개선·중지·폐전신고 : 별지 제6호서식
 4. 자동이체 신규·변경신청 : 별지 제9호서식
 5. 가정용 가구분할 적용 신규·변경 신고 : 별지 제10호서식
 6. 가정용과 다른업종 분할부과 적용 신규·변경 신고 : 별지 제11호서식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요금을 적용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가정용 가구분할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적용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할지 읍·면·동장에게 세대별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하여 분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 소유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신 소유자가 해당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매·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소유권 변동일과 건물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건물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59)

1. 부동산 인도명령서

2. 명도소송 확정판결 증명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접수 시 취득일에 계량기를 점검하고, 점검일부터 3일 이내에 구 소유자에게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 업종 변경신고) 시장은 수도사용자가 신고한 급수업종이 다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토록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옥내누수 감면신청)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누수 감면은 누수 전 정상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의 1/2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복구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2. 복구 작업사진 전, 중, 후 각 1매(별지 제14호서식)

③ 동일수전으로 옥내누수감면을 받은 수도사용자는 동일 수전에서 최종 감면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감면신청은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발행되는 고지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고, 매월 납부기한 10일 이전까지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 등으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전산서식을 따른다.

② 자동계좌이체(이하 “자동이체”라 한다)로 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이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에는 녹취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금은 매월 말일에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한 예금통장에서 자동 출금한다. 다만, 이 경우 수용가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13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60)

1.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공설소화전의 사용량 및 구경별 정액요금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고,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읍·면·동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기초생활수급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구 분할 적용을 할 수 있다.
 - ④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조례 별표 2의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사용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수도사용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조례 별표 2의 일반용 사용단계 1~50세제곱미터의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제14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의 개전·중지와 폐전)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개전 시에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운반급수) ① 선박과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그 밖의 사정으로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이 운반료를 수용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사용수량의 인정조정 등) ①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상(고장)이 있는 계량기에 대한 인정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1. 전월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월 검침량으로 한다.
2. 전월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회전 전 3개월분의 일일평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61)

균사용량으로 한다.

3.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전년도 동월 일일평균 사용량으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4. 신설 수도전의 사용량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검침된 사용량으로 부과한 후, 제1항제2호에 따라 차기 검침 시 정산 조정한다.

5. 습기, 수포, 유리파손 등으로 사용량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에 준하여 인정 계량하고, 검침이 가능하도록 제거한 후 확인된 지침에 따라 다음달에 정산한다.

② 계량기의 교체 후 전월 검침일 이후 금월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정상적인 계량기의 철거 : 교체 전 미 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

2. 비정상적인 계량기의 철거 : 교체 후 1일 사용량 × 사용일수.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이 수용가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시점 기준일 이전 일년간의 월 최고사용량과 원상회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일반 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두 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를 제출한 수용가에 대하여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량에 조례 제29조제1항 별표 2의 요율을 곱하여 합산한 요금으로 산정하고 부과한다.

제19조(가정용과 다른 업종 분할 부과)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가구당 15세제곱미터는 가정용을 적용하고, 나머지 양은 다른 업종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정용과 다른 업종 분할부과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62)

제20조(부정급수 사용량 산출) 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부정급수 사용량과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 : 전년도 징수 결정된 가구당 일일평균 사용량×부정급수기간×해당업종 요금
2. 그 밖의 업종 : 전년도 징수 결정된 해당업종의 일일평균 사용량×부정급수기간×해당업종 요금

② 제1항의 일일평균 사용량은 부정급수 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별지 제16호서식의 부정급수 확인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정급수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부정급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정수처분 및 예고)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하는 이행기간을 두어 정수처분을 한다는 뜻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8호 : 5일
2.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 즉시
3. 조례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5일(다만,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한다)

② 제1항의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조례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처분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수도계량기 설치비용) ① 조례 제42조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에게 계량기 대금과 수수료 등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또는 수도계량기의 동파로 파손된 경우에는 계량기 설치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3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계량기는 PDA로 검침할 수 있다.

제24조(인터넷 등 민원처리) 시장은 수도급수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63)

의 사항을 인터넷 및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의 고지 및 수납
2.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통보
3. 계량기 검침
4. 급수의 중지 및 폐전 신청
5. 가구분할 신규 및 변경신청
6. 소유자 명의 및 주소 변경신청
7. 업종변경 신청
8. 자동이체 신규 및 해지 신청

제25조(공탁금 예치 및 담보설정)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법인은 5,000만원, 계약검침원은 200만원의 현금 또는 보험증권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6조(검침수수료 등) ① 조례 제45조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수탁자의 검침전수에 따라 정산하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하수도사용료 수탁처리 수수료는 해당연도 수입금의 1퍼센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감면) 이 규칙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한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64)

[별지 제1호서식]

| 급수공사 신청서 | | | | | | 민원서류 | | | |
|---|---------------|---|------------------------|--------|--------|---------|---|--|--|
| 아래와 같이 급수공사를 받고자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계량기와 옥외급수설비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4조에 규정된 관리상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 | |
| | | | | | | 접수일시: | | | |
| | | | | | | 처리기관: | | | |
| | | | | | | 처리과 | | | |
| | | | | | | 기록물등록번호 | | | |
| 공사내용 | |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개조[계량기 구경확대] [위치변경]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계량기 구경축소] | | | | | | | |
| 공사위치 | | 사천시 읍면동 리(통) 반 번지(마을) | | | | | | | |
| 신청내용 | 건물유형 | | | | 건축물용도 | | | | |
| | 건축면적 | | ㎡ | | 연면적 | | ㎡ | | |
| | 세대수 | | ()세대 | | | | | | |
| | 건물허가유·무 | | 허가번호 | | 허가년월일 | | | | |
| 용 | 건축주(건물주) | | | | 계량기구경 | | D= mm | | |
| | |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주 소 (우편물도착주소) | | | | | | | | |
| | 휴대폰번호 | | | | SMS 수신 |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 | |
| | E-Mail @ | | | | | | | | |
| | 신청인과 관계 | | 본인, 가족, 세입자, 친척, 기타() | | | | | | |
| 상기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 | | | | | | | | |
|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 | | | | | | | | |
| 거래은행 | | 예금주명 | | 계좌이체일 | | | | | |
| 계좌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사 용 승 락 서 위 신청인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내 급수설비설치를 승낙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소유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 | | | | | | | | |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65)

[별지 제2호서식]

공용급수설비설치신청서(제4조관련)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서명 또는 날인)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연락처(전화 및 핸드폰) :

| 성명 | 주소 | 가족수 | 서약인 |
|----|--------------------------------------|-----|-----|
| |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 | |
| | 새주소: 읍·면·동 로 번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 | |
| | 새주소: 읍·면·동 로 번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 | |
| | 새주소: 읍·면·동 로 번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 | |
| | 새주소: 읍·면·동 로 번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 | |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66)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제4조제2항)

본인은 사천시 읍·면·동 번지 소재 공용급수설비의 책임을 지게 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급수요금은 소정 기일 내에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납기 내에 시 금고에 납부함.
2. 급수를 도용·남용 또는 타인에게 분여하는 행위를 일체 엄금함.
3. 임의로 급수용구 또는 양수기를 이동·변경·개조·증설 또는 훼손 누수하지 않음.
4. 수도사용자의 오물 및 의류·세탁 등으로 공중위생에 유해한 행위가 전무토록 함.
5. 그 밖에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4조의 위반 처분에 명시되어 있는 각 항을 준수함.

년 월 일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읍·면·동 리 번지)

공용급수관리지정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67)

[별지 제4호서식]

급수설비소유자(사용자)명의변경신청서(제8조관련)

사천시장 귀하

아래 전용수도에 대하여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명의변경 하고자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수 도 전 소 재 지 | 새주소: 읍·면·동 로 번지 (주소: 읍·면·동 리 번지) |
| 급수종류 | 급수종별 |
| 종전명의자 | 관리번호 |
| 신규명의자 | 주민등록번호 |
| 변경사유 | |

년 월 일

○신고인(신규명의자)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전화 및 핸드폰) :

|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 | | | | |
|------------------|--|--------|--|-----------|--|
| 거래은행 | | 예금주명 | | 계좌 이체일 | |
| 계좌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

| 수 도 전 대장정리 | 검침부 정 리 | 수납(채납) 부 정리 | 결 계 | | | 명 의 변 경 |
|---------------|------------|----------------|-----|------|-----|---------|
| | | | 담당자 | 담당주사 | 소 장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68)

[별지 제5호서식]

급수업종변경신고서(제8조관련)

사천시시장 귀하

아래와 같이 수도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 | | | |
|--------------|---|------------|--|
| 수도전 소재지 | 새주소 : 사천시 읍·면·동 로 번지 (주소 : 읍·면·동 리 번지) | | |
| 수도전 소유자 | | 사용자 또는 관리자 | |
| 종전급수업종 | | | |
| 변경코자 하는 급수업종 | | | |
| 변경사유의 급수실태 | | | |

년 월 일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읍·면·동 리 번지)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전화 및 핸드폰) :

|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 | | | |
|------------------|--|------|--------|-------|
| 거래은행 | | 예금주명 | | 계좌이체일 |
| 계좌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급수실태조사자의견 | 수도전대장정리 | 조정부리 | 수납(체납)부정리 | 검침카드정리 | 결재 | | | 비고 |
|-----------|---------|------|-----------|--------|-----|------|----|---------|
| | | | | | 담당자 | 담당주사 | 소장 | |
| | | | | | | | | 업종변경코자함 |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69)

[별지 제6호서식]

개 전 급수설비의 중 지 신고서 (제8조관련) 폐 전

사천시장 귀하

아래 수도전에 대하여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에 따라 (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 | | |
|------------|-------|----|--------|-------|---|-----|
| 수전소재지 새주소: | 읍·면·동 | 로 | 번지(주소: | 읍·면·동 | 리 | 번지) |
| 수용가성명 | 관리번호 | 업종 | 구경 | | | |
| 사 | 유 | | | | | |

년 월 일

새주소: 읍·면·동 로 번지(주소: 읍·면·동 리 번지)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전화 및 핸드폰) :

|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 | | | | |
|------------------|--|--------|--|-------|--|
| 거래은행 | | 예금주명 | | 계좌이체일 | |
| 계좌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

| 수 도 전 대장정리 | 검침부 정 리 | 수납(채납 부 정리 | 결 재 | | | 조치코자 함 년 월 일 |
|---------------|------------|---------------|-----|------|-----|---------------------|
| | | | 담당자 | 담당주사 | 소 장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71)

[이면]

| | | | | | | |
|----------------------|-----|------------|---|-----------|------------|----------------|
| 수 납 부 번 호 | | | | 양 수 기 관 리 | | |
| 년 도 | 종 별 | 번 호 | 비 고 | 년 월 일 | 사 유 | |
| | | | | | | |
| 업 종 및 명 의 변 경 | | | | | | |
| 명 의 변 경 | | | 업 종 변 경 | | | 폐 전 (단수) 및 개 전 |
| 년 월 일 | 성 명 | 정 리 자 인 | 년 월 일 | 성 명 | 정 리 자 인 | 년 월 일 |
| | | | | | | |
| 위 치 도 | | | | | | |
| | | | | | | |
| 배 관 상 세 도 | | | | | | |
| | | | | | | |
| 비 고 | | L형측구 접속도로 | 현 장 복 명 서 (현장조사보고서) | | | |
| | | 기존하수구 | 현장조사한 바 본 설계도서와 같으며 관말 양호 허가 수압 불량 함으로 불허 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년 월 일 | | | |
| | | 보도블럭 | | | | |
| | | 스틸하수구 | 조사자 : | | | |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72)

[별지 제8호서식]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청구서(제14조관련)

1. 수도전소제지 : 사천시 읍·면·동 리 번지
2. 업 종 : 관리번호 :
3. 수용가성명 :
4. 연 락 처 :
5. 청구사유 :

상기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 33조에 따라 이상시험을 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 읍·면·동 리 번지)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전화번호(전화 및 핸드폰) :

사천시장 귀하

(유의사항)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수수료 및 탈·부착비 등 필요한 제비용은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부담한다.

※ 처리과정

접수 → 공부대조 → 현지 → 시험 → 결재 → 결과통보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73)

[별지 제9호서식]

자동납부(신규·변경·해지)신청서(납부자용)(제8조관련)

※ 관리번호 :

※ 수용가 :

※ 주 소 :

◆ 납부자(신청인) 인적사항

※란은 신청서 접수시 취급자가 기입

| | | | |
|-------|------------------------------|--------|-------|
| 납 부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읍·면·동 리 번지 (새주소: 읍·면·동 로 번지) | | |
| 전화번호 | 집 : | 휴대폰 : | 사무실 : |

◆ 자동납부계좌

| | | | |
|---|----|---------------------|--------|
| 거래은행 | 은행 | 예금주명 | 인 (서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자동납부 신청사항

| | | | |
|-----------|------------------|---------|--|
| 신청구분 | (02) 신규, (08) 해지 | 대금종류 | |
| ※ 지로번호 | | ※ 납부자번호 | |

* 뒷면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납부신청서로 납부를 신청합니다.

| |
|------|
| 본인확인 |
| |

년 월 일
신 청 서명 또는 날인

| | |
|-----------------|------|
| 신청인 및 자동이체계좌 확인 | |
| 확인자 성 명 | (서명) |

사 천 시 장 귀 하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74)

[이면]

자동계좌이체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이체” 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 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 라 한다)와 (사천시 수도사업소) 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영업일)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3조(출금)

①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사천시수도사업소)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납부됩니다.

②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될 수 있습니다.

제4조(과실 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사천시수도사업소)이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5조(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출금처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됩니다.

제6조(출금 우선 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사천시수도사업소)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사천시수도사업소)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자동이체 신청)

(사천시수도사업소)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2. (사천시수도사업소)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9조(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시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10조(출금기준 및 이의 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사천시수도사업소)이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제11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납부자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은행에 제공됩니다.

제12조(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자동이체 등록 계좌가 2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75)

[별지 제10호서식]

가정용 가구분할적용신고서(신규·변경)(제8조관련)

관 리 번 호 :

수전 소재지(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읍·면·동 리 번지)

수용가 성명 :

연 락 처(전화 및 핸드폰):

위 본인은 1주택에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신고 하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적용대상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상수도 납부고지서 영수증 사본 1매.

사천시장 귀하

|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 | | | | |
|------------------|--|------|--------|-------|--|
| 거래은행 | | 예금주명 | | 계좌이체일 | |
| 계좌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가구분할적용신고접수증

읍면동접수번호 :

적용시기 : 월 납기부터 적용

시 접 수 번 호 :

소 유 자 성 명 :

신청 가구수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78)

[별지 제13호서식]

누수복구 확인서(제11조관련)

1. 공 사 일 시 :
2. 공사위치(주소) :
3. 공 사 내 역
 - 누수복구지점(부위) :
 - 누수발생관 :
 - 관련영수증(자재구입) 첨부

위와 같이 누수복구 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주소 : 읍·면·동 리 번지)
- 상 호 :
- 연 락 처(전화 및 핸드폰) :
- 성 명 : (인)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79)

[별지 제14호서식]

누 수 복 구 사 진(제11조관련)

○ 공사 전

○ 공사 중

○ 공사 후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80)

[별지 제15호서식]

부정급수 조사 및 과태료 산정서(제20조관련)

| | | |
|-----|------|-----|
| 담 당 | 담당주사 | 소 장 |
| | | |

| | | | | |
|-----------------|---|----------|----|------|
| 발 견 자 (신고자) | 성 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 |
| 조 사 자 | 소 속 | 직 급, 성 명 | | 전화번호 |
| | | | | |
| 부정사용자 | 수용가명 (관리번호) | 주 소 | 연락 | 업 종 |
| | | | | |
| 부정사용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일) | | | |
| 구 경 별 출 수 량 | 구 경(m/m) : m ³ | | | |
| 업 태 별 사용시간/일 | 업 종 별(주택) : 시간 | | | |
| 추정금액 산 정 | <p>예) 추정금액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를 면한금액 · 물량(구경별 출수량 × 업태별 평균사용 시간 × 사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57 × 3시간 × 25일 : 64m³ - 0.857 × 3시간 × 30일(77m³) × 2개월 : 154m³ · 금액(업종별 요율표, 계량기 구경별 요금에 따라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요금 0 원 + 하수도요금 0 원 = A 원 - [상수도요금 0 원 + 하수도요금 0 원] × 2개월 = B 원 <li style="padding-left: 40px;">소계 A + B = C 원 -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를 면한금액의 5배(단, 가정용 2배) : C 원 × 2배 = D 원 · 공공시설 부정사용 : E 원 - 합 계 : C 원 + D 원 + E 원 = F 원 | | | |
| 증빙자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급수(도수) 확인서 2. 부정급수(도수) 사진대지 | | | |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81)

[별지제16호서식]

부정 급수 확인서 (제20조관련)

성 명 :

새주소 : 읍·면·동 로 번지
(주소 : 읍·면·동 리 번지)

관리번호 :

부정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전화 및 핸드폰 :

상기인은 수도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도물을 사용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행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82)

[별지 제17호서식]

부정급수 현장사진 (제20조관련)

부정사용자명 :

| |
|--|
| |
|--|

사진설명 :

| |
|--|
| |
|--|

사진설명 :

| | | | |
|------|-------|-----|--|
| 촬영일시 | 년 월 일 | 촬영자 | |
|------|-------|-----|--|

사 천 시 공 보

제283호(84)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1-522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사 천 시 장

1. 업 체 명 : 가양종합건설(주)
2. 대 표 자 : 김용국
3. 영업소 소재지 :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647-4
(☎ 055-853-2161)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2011 - 01호
6. 등록일자 : 2011년 9월 23일